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봉양순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558호
- 다. 발의일자: 2025. 3. 31.
- 라. 회부일자: 2025. 4. 2.

###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집행률 저조 및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국비 미편성에 따라 올해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서울연구원 등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방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탄 교체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존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세탁소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을 권고로 완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안 제20조).
- 나.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안 제21조).
- 다.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홍보 및 표창 규정을 신설(안 제22조, 제23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sup>1)</sup>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20조는 「대기환경보전법」<sup>2)</sup>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규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세탁업, 인쇄업, 도장업 등 생활환경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로서 초미세먼지 (PM2.5)와 오존(O<sub>3</sub>)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신경계, 호흡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함.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집행률 저조 및 국비 미편성<sup>3)</sup> 등을 사유로 올해부터 사업을 중단하였음.

이에 대해 서울연구원 등은 서울시 산업 구조상 소규모(4·5종) 대기배출시설이 산재해 있고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은 도심 내 밀집 주거지역에 있어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등 방지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지원사업의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온과 상압에서 대기 중에 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 가운데 석유 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을 이르는 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별표 3과 같다.

25) 도장시설: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3) 국비 미편성 사유: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2019년 지원 이후 6년 경과, 집행률 매년 60% 수준)에 따른 사업축소

방향을 시설 설치 지원에서 유지관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인체 유해성 및 서울시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4.12월 기준)>**

계(개소)	1 종 (80톤 이상)	2 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 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4 종 (2톤 이상 10톤 미만)	5 종 (2톤 미만)
2,389	17 (0.71%)	12 (0.50%)	21 (0.88%)	786 (32.9%)	1,553 (65.0%)

- 동 조례 제20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4)에 따라 시장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실제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없는 방지시설 설치 명령보다는 자발적 설치를 권고(유인)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기질 관리에 유리하므로 안 제21조와 같이 방지시설 설치 ‘명령’ 규정을 ‘권고’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 안 제22조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23조는 대기환경개선에 공적을 세운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표창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 없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환경개선 활동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